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042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재단법인 원불교
피 고	금산군수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0,82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가. 원고는 원불교 교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7. 23.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399-9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층 종교집회장 232.1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1. 5. 9. 재단법인원불교대전충남교구(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6,871,970원, 등록세 2,748,780원, 농어촌특별세 687,190원, 지방교육세 512,700원 합계 10,820,6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12.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해 11.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사업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교화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소외 재단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재단은 모법인과 자법인의 관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불교 추부교당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 유지경영
2. 교역자 양성기관 및 각 육영의 유지경영
3. 의약 및 의료기관 유지경영
4. 유휴부동산 임대
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지경영
6.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우, 재가, 지역복지, 여성복지, 복지관 운영 및 기타 복지시설) 설치운영
7. 남북교류사업
8. 장묘업(장례식장, 공원묘지, 봉안당, 화장장, 장례용품)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인터넷 서비스 사업
11. 교육 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청소년 심신수련 및 교화사업, 교육위탁사업)
11. 영림 및 영농사업

나) 원고는 2010. 11.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구 자치화의 일환으로 소외 재단의 법인설립을 위해 원고의 재산을 출연하는데 있어 소외 재단이 설립된 후 원고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변경허가를 득한 후 재산을 출연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11. 1. 27.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고가 소외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출연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처분재산은 해당 설립교구(서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교구, 부산교구, 대전충남교구) 무상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관련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과 다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본 허가는 효력이 없음'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한편, 소외 재단은 2010. 12. 17.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54-9(원고의 분사무소인 대전·충남교구사무소의 소재지와 같다)를 주사무소로 하여 2011. 1. 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재단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원불교 교화사업 및 제 교당 유지경영
2. 교역자 양성사업 및 각 육영의 유지경영
3. 의료 구호사업
4. 유아 및 어린이 교육사업
5. 교화를 위한 구호자선사업(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우, 재가, 지역복지, 여성복지)
6. 북한교화사업
7. 장묘업(장례식장, 공원묘지, 봉안당, 화장장, 장례용품)
8. 교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
9. 교육 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청소년 심신수련 및 교화사업, 교육위탁사업)
10. 영림 및 영농사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의 하나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가 비영리사업자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재단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원불교 추부교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업 목적과 소외 재단의 사업 목적은 유휴부동산임대 외에는 거의 동일하고, 소외 재단의 주사무소는 원고의 기존 분사무소인 대전·충남교구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비과세의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이를 원불교 추부교당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한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처분재산은 해당 설립교구(서울교구, 부산교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대전충남교구) 무상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관련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과 다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본 허가는 효력이 없음'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목적 등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인다.

라) 원고로서는 기존 분사무소인 대전·충남교구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불과 2~3개월 전에 별개의 법인인 소외 재단에 이를 무상 출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원고의 신뢰 하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하여 유상의 대가 등을 받지는 않은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의 '증여' 규정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1. 1. 1.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한 규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인다.

마) 원고는 소외 재단에 대한 증여 이후에도 위 원불교 추부교당 담임성직자의 임명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원불교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의 사용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6조의 개정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8

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에 따른 지방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 단서, 제22조 제1항 단서, 제31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3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2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2조 제2항 단서, 제54조 제3항 단서, 제58조 제3항 단서, 제60조 제2항 단서, 제72조 제1항 단서, 제75조 단서, 제78조 제4항 단서, 제83조 제3항, 제89조 제1항 단서, 제90조 제1항 단서, 제91조 단서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